#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17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서삼석·정청래·위성곤

이개호・김원이・이형석

조오섭 · 이용빈 · 전용기

주철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률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해야 하나,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가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 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 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또한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정(법률 제16568호, 2019. 8. 27.)에 따라 개정된 「수산업・어촌발전기본법」의 어업 및 양식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연관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25조, 제66조).

법률 제 호

##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중 "변경함에 있어"를 "변경할 때"로 한다.

제25조제4항 중 "적합한지 여부를"을 "적합한지"로 한다.

제66조제1항 중 "양식업자에 대하여"를 "양식업자에게"로, "교부"를 "지급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"으로 한다.

②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

업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"으로 한다.

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"으로 한다.

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"으로 한다.

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"으로한다.

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"을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

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"으로 한다.

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"으로 한다.

제35조의3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"으로 한다.

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"으로 한다.

⑨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6호나목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"으로 한다. ⑩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의2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

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의3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"으로 한다.

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"을 "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"으로 한다.

②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"을 "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"으로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)	제9조(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개발	⑦
계획을 <u>변경함에 있어</u> 새로운	<u>변경할 때</u>
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	
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	
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	
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	
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	
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	
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	
다.	
⑧·⑨ (생 략)	8· 9 (현행과 같음)
제25조(면허의 심사·평가) ① ~	제25조(면허의 심사·평가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	4
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	
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	
심사·평가 항목에 <u>적합한지 여</u>	<u>적합한지</u>
<u>부</u> 를 판단하고, 그 결과를 해당	
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	
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.	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66조(보조 등) ① 행정관청은	제66조(보조 등) ①
양식산업의 육성・발전을 위하	
여 필요한 경우에는 <u>양식업자</u>	<u>양식업자</u>
<u>에 대하여</u> 보조금을 <u>교부</u> 하거	<u>에게지급</u>
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